



법령정보
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 44호, 2009. 6. 30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10. 일반시험법을 분석물질의 화학적 특성, 잔류 및 오염 특성 등에 따라 재분류하고 시험법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며, 시험법의 수록항목 및 기술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시험법의 신뢰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, 식품의 제한적 사용원료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식품개발 등 식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시험법 분류체계 재편 및 용어 통일,

시험법의 수록항목 및 기술 방법 개정

- (1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10. 일반시험법에 수록된 시험법의 체계가 일관

- 되지 않아 시험법의 재분류 및 서술 형식 등 개선이 필요함.
- (2) 제10. 일반시험법을 분석물질의 화학적 특성, 잔류 및 오염 특성 등에 따라 9개군으로 재분류하고, 시험항목을 수준별 번호 증가체계로 개선하며, 시험법에 사용되는 기구, 시약 등의 용어 및 단위 표기를 통일함. 또한 시험법 수록체계를 일관된 양식으로 개선하고 개선된 양식에 따라 시험법 적용범위, 분석원리,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, 정량한계 등 추가함.
- (3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10. 일반시험법에 대한 이해도 및 편의성 향상

나. 시험법의 신설, 개정 및 삭제

- (1)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된 시험법을 신설하고, 분석시간을 단축시키며 정확성과 정밀성이 높은 시험법으로 개정 필요
- (2) 시험법 주요개정 내용
- (가) 총질소 및 조단백질 중 단백질분석기를 이용한 방법, 니코틴산(나이아신) 중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량법, 콜레스테롤, 트랜스지방, 보존료(데히드로초산, 소르빈산, 안식향산 및 그 염류,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) 중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성 및 정량시험 신설 [제10의 1.1.3.1, 1.1.5.5, 1.1.5.6, 1.2.2.5의 다 및 2.1.1의 라]

- (나) 카벤다짐, 베노밀 및 티아벤다졸 등 잔류농약 관련 23개 시험법 신설[제10의 4.1.3.22, 4.1.3.26 ~ 4.1.3.28, 4.1.4.26, 4.1.4.119~ 4.1.4.136]
- (다)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중 합성항균제 2종 및 겐타마이신 등 동시시험법 신설[제10의 5.3.1, 5.3.14, 5.3.51, 5.3.60 및 5.3.83]
- (라) 다중농약다성분에 대한 시험법 중 추출용매로 아세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[제10의 4.1.2.2]
- (마)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중 미생물을 이용한 간이시험법 개정[제10의 5.2]
- (바)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정량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, 겐타마이신, 스펙티노마이신 시험법 삭제
- (사) 잔류농약시험법 중 일부 단성분 시험법(카벤다짐 등 8종), 다성분시험법(벤셀프론-메칠 및 클로르셀프론 등 2종) 삭제
- (3)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험법으로 개정하여 시험법의 신뢰성 향상

다. N-아세틸글루코사민 등 4종을 식품의 제한적 사용 원료로 인정[[별표2]의 3]

- (1) 식품원료에 사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식품개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힘.

(2) N-아세틸글루코사민, 식물스테롤, 식물스테롤에스테르, 식물스타놀에스테르 등 4종의 사용량 및 섭취량 제한을 통한 식품의 제한적 사용원료로 인정

라.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(부칙 제2조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 45호, 2009. 6. 30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면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

대상 품목 확대

(1) 면류 중 국수, 냉면, 당면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.

나.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(부칙 제2조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 47호, 2009. 7. 3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19조 별표 8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정함으로써 영업자가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」을 제정고시 하였습니다.